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 747 호

2007년 3월 30일 금요일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846호(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847호(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848호(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포상 조례) 11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849호(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850호(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851호(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 32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304호(차령초과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예고) 3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307호(시설공사 (긴급)입찰공고) 38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311호(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312호(남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공개 명단) 6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316호(시설공사 입찰공고) 6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320호(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6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321호(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간경과안내(독촉)
공시송달 공고) ... 7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322호(운행차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7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323호(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 독촉(체납)
공시송달 공고) ... 7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324호(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 기간경과안내(독촉)
공시송달 공고) .. 7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325호(특정경유차 배출가스검사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81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326호(특정경유차 배출가스검사 과태료독촉 공시송달 공고) 8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327호(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비관리청)를
위한 공람·공고) ... 8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1호(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공고) 89

고 시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7-10호(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변경)) 105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조 례

남동구 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7년 3 월 30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남동구 조례 제84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공인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공인 조례”로 한다.

제5조의 “ 별지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제5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등록하여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한다.
- ②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 ③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할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④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의회공인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전자이미지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 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 존하여야 한다.	제5조(교부 및 등록) ----- -----별지 제1호서식의 ----- -----.
제5조의2 (신설)	제5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별 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등록 대 장에 등록하여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 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등록대장의 해 당란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 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 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할 경우 즉시사 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 록한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이미 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 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 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 다.

[별지 제1호 서식]

공 인 대 장

공인명					
종 류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관리부서	
☐ 등 록 공 인 ☐ 재등록 공 인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긴사람	주 소: 성명 및 상호: 주민등록번호: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록(재등록)사유			
		구보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호		
		비 고			
폐 기 공 인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폐 기 일 (분실일)	년 월 일		
		폐기사유	☐ 마멸 ☐ 분실 ☐ 기타()		
		폐기방법	☐ 소각 ☐ 이관 ☐ 기타()		
		폐 기 자 (분 실 자)	소 속: 직 급: 성 명:		
		구보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호		
		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 등록란에 v 표를, ☐ 재등록란에 v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

공인명			
종 류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록· 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 영	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최초 사용 일 : 년 월 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영	등록(재등록) 사 유	
		관 리 부 서	
		비 고	
폐 기	전자이미지공인 영	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	
		폐기사유	
		폐 기 자	소속: 성명:
		비 고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사무관리규정 제38조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공인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업무처리의 확대로 전자이미지공인의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남동구 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7년 3 월 30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남동구 조례 제84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여비지급기준)의 [별표3]중 “일비 10,000원”을 “일비 2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

신구조문대비표**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제6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

연 행		개 정 안	
구 분	의원1인	구 분	의원1인
철도운임	1등급	철도운임	현행과 같음
선박운임	2등정액	선박운임	현행과 같음
항공운임	정 액	항공운임	현행과 같음
자동차운임	정 액	자동차운임	현행과 같음
일비 (1일당)	10,000	일비 (1일당)	20,000
숙박비 (1야당)	46,000	숙박비 (1야당)	현행과 같음
식비 (1일당)	25,000	식비 (1일당)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06.10.17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동구의회 의원 국내여비지급 단가를 일부조정 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의하여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의 일비를 일당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조정 (안 제6조)

남동구 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포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7년 3 월 30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남동구 조례 제84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및 감사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3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다음 각호와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여한다.

1. 표창장

- 가. 지역사회발전 또는 구민의 복리증진이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경우
- 나. 의정활동에 적극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 다. 사회도의와 미풍양속 실천에 솔선수범한 경우

2. 감사장 및 감사패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지원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 또는 단체

3. 공로패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4. 기념패

- 가.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의회를 대표한 의장이나 의원 등이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방문할 경우

5. 상 장

- 가. 학술·예술·체육·기타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나. 각종 교육에 있어서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다. 각종 품평회·경진대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제4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수여한다.

②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관련법규 범위 내에서 상패·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2. 각종 의정행사의 초청 등을 통한 사기양양
3. 기타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단, 기념패는 "의원일동"의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포상시기) 포상은 포상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수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7조(대상자 추천) ①포상대상자의 추천은 각급 기관장 또는 구 의원, 의회사무국장이 한다.

②제1항의 포상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8조(공적심사) ①포상(표창)은 의회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3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표창자의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9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 ①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의회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상임위원회전문위원(3명) 및 의사담당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의정담당이 된다.

④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⑤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의회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1조(수상자 명부) ①포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상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포상의 발급번호는 포상의 종류에 구분 없이 누연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의회문장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성명

본문.....
.....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 ○ 인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의회문장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성명

본문.....
.....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 ○ 인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의회문장

공 로 패

주소 또는 소속

성명

본문.....

.....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 ○ 인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의회문장

기 념 패

주소 또는 소속

성명

본문.....

.....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 ○ 인

[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의회문장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성명

본문.....

.....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 ○ 인

[별지 제6호 서식]

공적심사 의결서

구 분	주소 또는 소속	직위	성명	담당업무내용
표창대상자 인적사항				
의결주문				
이유				
	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위원 . . .			

[별지 제7호 서식]

포 상 주 천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직 급		근무기간	년 월
추천훈격		추천순위	
추천사유			
1.			
2.			
3.			
4.			
5			
※첨부 : 공적조서 1부			
추 천 인			
소 속	직 위(급)	성 명	
		(인)	
		(인)	
		(인)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공 적 조 서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의 경우)	
주소			
소속		직위	
직급		근무기간	
추천훈격		추천순위	
주요학력 및 경력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과거포상기록(훈장, 포상, 표창별로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공 적 사 항

[별지 제9호 서식]

[illegible]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을 수여함으로써 노고를 치하하고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및 감사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안 제2조)
- 포상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여 한다.(안 제3조)
-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각급 기관장 또는 구의원, 의회사무국장이 한다. (안 제7조)
-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안 제8조)
- 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안 제9조)

남동구 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7년 3 월 30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남동구 조례 제84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의 “구본청 4급이상 공무원”을 “구본청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18조 본문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구청장이 지역여건변화 등으로 보육시설을 폐지하고자 할 때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 종전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중인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은 종전조례에 의하여 2년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연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회의 구성등) ① 내지 ② (생략) 1. 내지 3. (생략) 4. <u>구본청 4급 이상 공무원</u>	제2조(위원회의 구성등) ① 내지 ② (현행과 같음) 1. 내지 3. (현행과 같음) 4. <u>구본청 공무원</u>
제12조(위탁기관) ①구립보육시설의 위탁 기간은 <u>2년</u> 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갱 신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기간) ①_____
	_____3년_____
	_____.
제1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u>다음 각호</u> <u>에</u>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의 취소) _____ <u>다음 각호의 어느</u> <u>하나에</u> _____
1. 내지 4. (생략) 5.(신설)	1. 내지 4. (현행과 같음) 5. <u>구청장이 지역여건 변화 등으로</u> <u>보육시설을 폐지하고자 할 때</u>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남동구 영유아보육정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 조정과 지역여건 변화로 존치가 필요 없는 공립시설에 대하여는 위탁취소 규정을 명확히 하여, 보육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 위원회 당연직 위원구성에서 4급 공무원을 구본청 공무원으로 개정(안제2조)
- 공립보육시설 위탁기간을 “2년”을 “3년”으로 개정(안제12조)
- 공립보육시설의 지역여건 변화 등으로 보육시설을 폐지하고자 할 때를 신설(안제18조)

남동구 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7년 3 월 30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남동구 조례 제85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 인천광역시남동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 를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 로 한다.

제1조(목적)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유아교육법」 제26조·제27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의 “자치구 세수입과”를 “지방세와”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보조금의 예산은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학교”라 한다)는 연간 1억원 범위 내
2. 유치원(사립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연간 1천만원 범위 내

③ 보조금의 예산은 학교와 유치원을 분리하여 편성한다.

제3조 본문중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을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유치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으로 하고, 제6호, 제7호,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6.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연수경비 및 교재·교구비

7.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에 소요되는 교육환경 개선비·인건비 및 교재·교구비

8.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5조제1항중 “7인”을 “9인”으로 하고 “1/2”를 “1/3”으로 하고, 제1항제4호중 “전문가”를 “학교운영협의회 위원 또는 전문가”로 한다.

제13조제1항의 “위원회는”을 “구청장의”로하고, “학교가”를 “학교 및 유치원”으로 하며, “위원회의”를 “구청장의”로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보조금의 관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 및 유치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별 경리 보고서
3. 보조사업 및 보조금의 사용을 종료 한 때에는 사업종료 또는 실적 보고서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 및 유치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에관한규정」, 「유아교육법·시행령」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연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u> 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동구비를 재원으로 관할구역 안에있는 <u>고등학교 이하의 학교</u> (이하 학교라 한다)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교육의 균형있는 발전</u> 을 도모하기 위하여 「 <u>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u> 」 제11조제6항 및 「 <u>유아교육법</u> 」 제26조·제27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u>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①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u>자치구 세수입과 세외수입액을 합한 예산액의 3%범위 내에서</u> 지원할 수 있다.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① ----- ----- <u>지방세와</u> ----- -----.
②보조금 지원은 1개 학교에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예산은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③<신설>	1. <u>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학교”라 한다)는 연간 1억원 범위 내</u> 2. <u>유치원(사립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연간 1천만원 범위 내</u> ③ 보조금 예산은 학교와 유치원을 분리하여 <u>편성한다.</u>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u>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 할 수 있는 사업</u> (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u>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유치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 할 수 있는 사업</u> (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학교 급식시설 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1~2. (현행과 같음)

연행	개정안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 사업	3~5 (현행과 같음)
4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공간 설치사업	
6 <신설>	6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연수경비 및 교재·교구비
7 <신설>	7 유치원 종일반의 교육환경개선비·인건비 및 교재·교구비
8 <신설>	8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5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다만, 구공무원인 위원의수는 전체위원의 1/2이하 이어야 한다.	제5조(구성) ① _____ _____ 9인 _____ _____ _____ _____ 1/3 _____.
1. 구 공무원	1~3 (현행과 같음)
2. 남동구의회 의원 3인	
3. 관할 교육구청에서 추천하는 교육자	4 _____
4. 기타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_____ 학교운영협의회 위원 또는 전문가
②③(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연	행	개	정	안
제13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①위원회는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생략) ② (생략)	제13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구청장은-----학교 및 유치원이----- -----구청장의-----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구청장은 -----학교 및 유치원이----- -----구청장의 -----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구청장은 -----학교 및 유치원이----- -----구청장의 -----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구청장은 -----학교 및 유치원이----- -----구청장의 -----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보조금의 정산)보조금을 집행한 기관은 정산내역을 60일 이내에 구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의 관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 및 유치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별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 및 보조금의 사용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 또는 실적보고서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 및 유치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의 관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 및 유치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별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 및 보조금의 사용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 또는 실적보고서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 및 유치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의 관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 및 유치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별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 및 보조금의 사용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 또는 실적보고서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 및 유치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의 관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 및 유치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별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 및 보조금의 사용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 또는 실적보고서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 및 유치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규정과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준용)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에 관한규정, 「유아교육법·시행령」,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준용)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에 관한규정, 「유아교육법·시행령」,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준용)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에 관한규정, 「유아교육법·시행령」,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준용)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에 관한규정, 「유아교육법·시행령」,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유치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인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제26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개정

□ 주요내용

- 교육경비보조기준액의 제한 수정 및 신설(안 제2조)
- 보조사업의 범위 수정 및 신설(안 제3조)
-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구성인원 수정 및 확대(안 제5조)
-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보고 수정(안 제14조)

남동구 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7년 3 월 30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남동구 조례 제85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특별휴가) 제1항 중 [별표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분	대 상	개정	비고
계		30	
결혼	본인	7	
출산	배우자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3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동조 제2항 중

“임신 중의 여성공무원은 정상적인 만기출산과 임신기간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임신 4월 미만의 경우에는 30일에 한하여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를 “임신중의

여성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부여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 일반병가를 얻을 수 있다.

1. 임신 16주 미만(105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2. 임신 중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또는 안정이 필요한 경우”로 한다.

동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임신기간중 유산·사산의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유산·사산한 날부터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이외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1.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에는 30일 까지
2. 임신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60일 까지
3. 임신 28주 이상인 경우 90일 까지

동조 제4항(현행 제3항)중 단서조항을 “삭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구조문 대비표

연 행	개 정 안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3조(특별휴가)①----- ----- -----.																																																				
[별표3]	[별표3]																																																				
<table><tr><th>구분</th><th>대 상</th><th>일수</th></tr><tr><td>계</td><td></td><td><u>19</u></td></tr><tr><td>결혼</td><td>본인</td><td><u>7</u></td></tr><tr><td>출산</td><td>배우자</td><td><u>3</u></td></tr><tr><td rowspan="5">사망</td><td>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td><u>5</u></td></tr><tr><td>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td><td><u>2</u></td></tr><tr><td>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td><td><u>2</u></td></tr><tr><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td><td><u>0</u></td></tr><tr><td>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td><td><u>0</u></td></tr><tr><td>탈상</td><td>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td><u>0</u></td></tr></table>	구분	대 상	일수	계		<u>19</u>	결혼	본인	<u>7</u>	출산	배우자	<u>3</u>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u>5</u>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u>2</u>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u>2</u>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u>0</u>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u>0</u>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u>0</u>	<table><tr><th>구분</th><th>대 상</th><th>일수</th></tr><tr><td>계</td><td></td><td><u>30</u></td></tr><tr><td>결혼</td><td>본인</td><td><u>7</u></td></tr><tr><td>출산</td><td>배우자</td><td><u>3</u></td></tr><tr><td rowspan="5">사망</td><td>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td><u>5</u></td></tr><tr><td>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td><td><u>3</u></td></tr><tr><td>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td><td><u>5</u></td></tr><tr><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td><td><u>3</u></td></tr><tr><td>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td><td><u>3</u></td></tr><tr><td>탈상</td><td>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td><u>1</u></td></tr></table>	구분	대 상	일수	계		<u>30</u>	결혼	본인	<u>7</u>	출산	배우자	<u>3</u>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u>5</u>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u>3</u>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u>5</u>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u>3</u>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u>3</u>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u>1</u>
구분	대 상	일수																																																			
계		<u>19</u>																																																			
결혼	본인	<u>7</u>																																																			
출산	배우자	<u>3</u>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u>5</u>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u>2</u>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u>2</u>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u>0</u>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u>0</u>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u>0</u>																																																			
구분	대 상	일수																																																			
계		<u>30</u>																																																			
결혼	본인	<u>7</u>																																																			
출산	배우자	<u>3</u>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u>5</u>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u>3</u>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u>5</u>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u>3</u>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u>3</u>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u>1</u>																																																			
②임신 중의 여성공무원은 <u>정상적인 만기 출산과 임신기간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임신 4월 미만의 경우에는 30일에 한하여 출산 휴가를 얻을 수 있다.</u>	②-----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출산일 또는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부여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 일반 병가를 얻을 수 있다.																																																				

연 행	개 정 안
(신 설)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 건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임신 7월부터는 1일을 가하여 얻을 수 있다. 다만, <u>생리로 인 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u> ④, ⑤(생략)	1. 임신 16주 미만(105일 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2. 임신 중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또는 안정이 필요한 경우 ③임신기간중 유산·사산의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유산·사산한 날부터 특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모자보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이외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 한다. 1.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에는 30일 까지 2. 임신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에는 60일 까지 3. 임신 28주 이상인 경우 90일 까지 ④ ----- ----- -----.(삭제) ⑤, ⑥(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공직사회 전반의 환경변화로 현실에 부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사항 등을 반영함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휴가일수를 조정함으로써 모성보호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경조사휴가 총19일에서 30일로 상향조정(안 제23조제1항)
- 출산휴가 일수 90일 조정 및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토록 함(안 제23조제2항)
- 유산, 사산휴가 산모보호를 위하여 대하여 주기별 특별휴가 규정(안 제23조제3항)
- 보건휴가 무급에서 유급으로 개정 (안 제23조제4항)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 - 304호

차령초과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예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2007. 4. 9일까지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압류에 관계없이 폐차 말소등록 처리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7. 3. 26 ~ 2007. 4. 9(15일간)

2. 대상 자동차

신청대상차량			이해관계내용	이해관계인	송 달 지
자 동 차 등록번호	성명	사용본거지			
인천30도9225	김수민	남동구월동1157-5 동신센스빌 302호	인천지방법원 (사건99카단31796)	다이너스 클럽리아	서울 강남구 도곡동949-10호

3.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과 차량등록팀(☎453-2941)

2007. 3. 2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7 - 307호

시설공사 (긴급)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통합관제센터구축 및 정보통신실 환경개선공사
- 공사위치 : 남동구청내 3층 정보통신실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개요 : 통합관제센터구축, 통신시스템 재배치 및 통신선로 공사,
통신실 확장 및 인테리어 설비등
- 설계금액 : ₩175,684,300원(추정가액 159,713,000원 부가가치세 15,971,300원)
- 기초금액 : ₩175,684,300원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7년 03월 27일(화) 09:00~ 04월 02일(월요일)15:00
-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7년 04월 02일(월요일) 16:00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내에 주된 사업소를 갖추고,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소지업체로 합니다.
- 입찰참가 업체에서는 주요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주요제품(M-PDP 및 교환기)의 제조사로부터 기술지원 협약서 및 물품공급 협약서를 입찰마감 1시간전까지 우리구 경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4.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175,684,300) $\pm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
- 이 중 투찰자에 의해 다 빈도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7.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한(87.745%)적 최저가로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19호, 2006. 10. 27)에 의거 수행능력 평가점수와 가격입찰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기준(2005년도) : 부채비율 164.93% 유동비율 123.04%

8.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 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 경리팀(032-453-2262) 또는 총무과 정보통신팀(032-453-2302)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남동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namdong.incheon.kr>)의 입찰공고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07년 03월 26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리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07 - 31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27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주민편익을 위하여 대형폐기물의 인터넷 배출 신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처리 수수료를 세분화하여 수수료의 객관성을 확보하며 무단투기 과태료 관련서식을 환경부 예규에 따라 통일성을 기함으로써 조례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본문”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7년 4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 : 청소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453-2553), FAX(453-255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5. 붙임 :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별표1〕”과 제5호중 “〔별표2〕”를 “별지”와 같이한다.

제4조제3항중 “구청장이 지정한 스티커를 부착하여”를 “구청장이 지정한 스티커 또는 전산망을 이용한 신고필증을 부착하여”로 한다.

제6조제2항중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를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의 “〔별표3〕”을 “별지”와 같이하고, “제2조 내지 제4호”를 “제2호 내지 제4호”로 한다.

같은조 제3항중 “판매소에 판매하는 방법에 의한다.”를 “판매소에 판매하는 방법 또는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판매소에서”를 “판매소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로 하고, “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를 “판매자 또는 전자지불센터에 일정율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1호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고, 제4호중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다른 법령에 의해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폐기물봉투의 매수)”를 “(환불)”로 하고, 제1항중 “폐기물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한다.”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매수”를 “환불”로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하고, 제2항 중 “〔별지 제8호 서식〕”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구청장은”을 “구청장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 및 제4조제4항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이류	-신문지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종이컵, 팩 -상자류(과자·포장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등)	-물기에 젖지 않게 함.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비닐코팅 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비닐포장지의 제외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 후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비닐코팅부분 제거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 류	-철 캔, 알루미늄 캔 (음·식용류) -기 타 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 후 가능하면 압착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봉투(비닐봉투 가능)에 넣어서 배출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병 류	-음료수병, 기타병 -농약병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담배꽂초 등 이물질들을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물로 행군 후 음료수병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4. 고철류	-고철(공기구,철사, 못, 철판 등쇠붙이) -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위와 같음
5. 플라스틱 류	-PET, 합성수지 용기류, 일반가정용생활 용품류 -페스티로폼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이물질 및 라벨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과일, 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 접라면 용기, 1회용 용기,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 재질로 코팅된 것은 제외
6. 필름류 (신설)	-음식료품류 -화장품, 세제, 의약품류 -농수축산물류	-비닐포장재류(과자, 라면봉지, 세제, 화장품 등)는 별도의 흰색(투명)봉투에 차곡차곡 넣고 흩어지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 * 1회용 비닐봉지류(검정, 흰색 등)는 재활용 분리배출 품목이 아님

[별표2]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 (제2조 및 제9조제1항 관련)

품 명	규 격	수수료 (원)	품 명	규 격	수수료 (원)
가 스 렌 지	높이 1m이상	4,000	서랍장	5단이상	7,000
	높이 1m미만	2,000		5단미만	5,000
가습기	모든규격	2,000	세탁기	8kg이상	6,000
공기청정기	높이 1m이상	4,000		8kg미만	5,000
	높이 1m미만	2,000	쇼파	1인용 의자	5,000
냉장고	500ℓ 이상	10,000		2인용 의자	7,000
	300ℓ 이상	8,000		3인용 의자	9,000
	300ℓ 미만	6,000		4인용 의자	10,000
	모든규격	2,000		테이블	3,000
다리미	모든규격	2,000	스탠드	모든 규격	2,000
다리미판	모든규격	1,000	스피커	대	3,000
	모든규격	1,000		소	2,000
돛자리	2.5m이상	5,000	식탁	6인용이상	6,000
	2.5m 미만	3,000		6인용미만	5,000
런닝머신	모든규격	8,000	식기건조기	모든 규격	3,000
문갑	모든규격	5,000		모든규격	5,000
문짝	철재	5,000	싱크대	대(개수대 포함)	5,000
	목재	4,000		소	4,000
믹서기	모든규격	2,000	쌀통	모든 규격	4,000
벽시계	대(입식)	5,000		대(1m이상)	4,000
	소(일반)	3,000		중(1m미만)	3,000
변기,세면기	모든규격	5,000	아이스박스	소(0.5m미만)	2,000
병풍	모든규격	5,000		대	5,000
보일러	모든규격	6,000		중	3,000
비디오(VTR)	모든규격	3,000	액자	소	2,000
빨래건조대	모든규격	2,000		대	5,000
선풍기	모든규격	3,000			

품 명	규 격	수수료 (원)	품 명	규 격	수수료 (원)
어항	대(2m이상)	8,000	장판	5m 이상	5,000
	중(1.5m이상)	5,000		5m 미만	4,000
	소(1m미만)	3,000	전기밥통	모든규격	3,000
에어컨	264m ² 이상	10,000	거울	전신거울(대)	3,000
	66m ² 이상	7,000		일반거울(소)	2,000
	66m ² 미만	5,000	전자레인지	모든규격	3,000
오디오	대	5,000	책상	편수(소형)	5,000
	중	4,000		양수(대형)	6,000
	소	3,000		상판	3,000
	오디오,TV다이	3,000		의자	4,000
오락기	대	10,000	책꽂이	3단이상	4,000
	중	8,000		3단미만	3,000
	소	5,000	청소기	모든규격	3,000
오르간	모든규격	6,000	침대	2인용(매트리스1개)	12,000
옥돌,자석요	모든규격	10,000		1인용(매트리스1개)	10,000
욕조	재질(돌)	10,000		2인용 매트리스	8,000
	재질(플라스틱)	5,000		1인용 매트리스	7,000
유모차,보행기	모든규격	3,000		2인용 침대틀	4,000
의자	모든규격	4,000		1인용 침대틀	3,000
자전거	대(어른용)	5,000	카펫트	대(길이 2.5m 이상)	12,000
	소(어린이용)	4,000		소(길이 2.5m 미만)	7,000
장롱 (쪽당)	120cm 이상	10,000	컴퓨터	모니터	3,000
	90cm 이상	9,000		본체	2,000
	90cm 미만	7,000		키보드	1,000
장식장 (차단스)	모든규격	5,000		프린터	2,000
전기장판	모든규격	3,000		컴퓨터책상	4,000

품 명	규 격	수수료 (원)	품 명	규 격	수수료 (원)
캐비닛	모든규격	5,000	난방기구	모든규격	4,000
탈수기	모든규격	5,000	피아노	그랜드	15,000
텔레비전	25인치 이상	5,000		어프라이트	10,000
	25인치 미만	3,000	향아리	대	5,000
토스터기	모든규격	2,000		중	3,000
파일캐비닛	서랍식 4단이상	5,000		소	2,000
	서랍식 3단이하	4,000	화장대	모든규격(일반)	5,000
유리	식탁 및 책상유리	3,000		영업용(미용실용)	10,000

※ 상기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별표3]

폐기물봉투가격 등의 산정 방법(제9조제2항 관련)☐ 규격봉투 가격의 산정

$$\text{봉투가격}(\ell \text{ 당}) = [(\text{총비용} \times \text{수수료자립도 } 0.70 \sim 1) \div (\text{년간처리량}(\text{kg}) \div \text{환산계수 } 0.4)] \\ + \text{판매수수료} + \text{봉투제작비}$$

주)1) 총비용

○ 기 준

○ 총비용 구성내역 : 대행료, 반입료, 무단투기폐기물처리비

2) 수수료 자립도(0.70~1)

수수료의 자립도를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향상

년도별 자립제고목표

년 도	2006	2007	2008	2009
자립도(%)	<u>70</u>	<u>80</u>	<u>90</u>	<u>100</u>

3) 연간 처리량

○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기준

○ $\text{kg} \div \text{환산계수 } 0.4$ 는 무게단위를 부피단위(ℓ)로 환산하여 봉투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산식

4) 판매수수료는 9%를 적용

5) 봉투제작비는 폐기물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 가정사업계용 봉투 가격의 산정

$$\text{봉투가격}(125\ell) = \frac{(\text{총비용} \times 0.6)}{\text{처리비용}} + \text{판매수수료} + \text{봉투제작비}$$

주)1) 처리비용

○ 통상 무단투기된 사업폐기물 처리시 구청장과 처리업체와의 처리금액의 60% 수준으로 정함.

2) 판매수수료는 9%를 적용

3) 봉투제작비는 폐기물봉투 제작단가를 말함.

☐ 대형폐기물 판매수수료 및 판매소 공급가격

○ 판매수수료는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9%로 한다.

○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소 공급가격 =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 판매수수료

[별지 제6호서식]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반행위	일시	 :	내용			
위반법률	폐기물관리법 제 조		발부일자	. .	의견제출기한	.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을)

(피처분자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반행위	일시	 :	내용			
위반법률	폐기물관리법 제 조		발부일자	. .	의견제출기한	.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병)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세입자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정)

(개인 통지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 급 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무)

(처분기관 통보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생활 및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① ~② 생략 ③ 대형폐기물은 배출한 폐기물전면에 <u>구청장이 지정한 스티커를 부착하여</u>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배출하고 “처리대행업체에 배출일시, 장소, 위치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⑦ 생략	제4조(생활 및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구 청장이 지정한 스티커 또는 전산망을 이용한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_____. ④~⑦ (현행과 같음)
제6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②구청장은 제4조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u>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u>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 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 6 조 (생 활 폐 기 물 적 정 배 출 을 위 한 조 치) ② _____ _____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한다. _____.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생략) ②제1항 제2조 내지 제4호의 판매가격과 판매수수료 등의 산정방법은 <u>별표3</u> 의 기준에 의한다. ③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부과는 판매가격에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부과하고 징수는 <u>판매소에 판매하는 방법</u> 에 의한다. ④ 생략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현행과같음) ②—제2호 내지 제4호— _____. ③ _____ _____ 판매소에 판매하는 방법 또는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④(현행과 같음)

연	행	개	정	안
제12조(폐기물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의 공급 또는 판매)	제12조(폐기물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의 공급 또는 판매)	제12조(폐기물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의 공급 또는 판매)		
① 생략	① 생략	①(현행과 같음)		
② 일반용봉투와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가정사업계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수수료를 배출 자 가 부과할 수 있다.	② 일반용봉투와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가정사업계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수수료를 배출 자 가 부과할 수 있다.	②		-----판매소 또는전산망을통하여-----판매자 또는 전자지불센터에 일정율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수수료의 감면) ①생략	제13조(수수료의 감면) ①생략	제13조(수수료의 감면) ①현행과 같음		
1.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1.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2.(생략)	2.(생략)	2.(현행과 같음)		
3.(생략)	3.(생략)	3.(현행과 같음)		
4.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의해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		
②생략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제14조(폐기물봉투의 매수) ① 구청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제14조(폐기물봉투의 매수) ① 구청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제14조(환불) ① 구청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봉투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봉투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②-----환불에-----		

연 행	개 정 안
제19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구청장은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u>별지6호서식</u> 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의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현장에서과태료처분 통지를 할 수 있다.	제19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 ----- ----- -----.
②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과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독촉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 ----- ----- ----- 과태료 독촉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20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u>구청장</u> 은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0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u>구청장</u> 의 ----- ----- -----. ② (현행과같음)

[별표2]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 (제2조 및 제9조제1항 관련)

연행			개정		
품명	규격	수수료 (원)	품명	규격	수수료 (원)
냉장고	500ℓ 이상	10,000	현행과같음		
	300ℓ 이상	8,000			
	300ℓ 미만	6,000			
텔레비전	25인치이상	5,000			
	25인치미만	3,000			
세탁기	8kg이상	6,000			
	8kg미만	5,000			
에어콘	264㎡형이상	10,000			
	66㎡형이상	7,000			
	66㎡형미만	5,000			
가스렌지	높이 1m이상	4,000			
	높이 1m미만	2,000			
탈수기	모든 규격	5,000			
공기청정기	높이 1m이상	4,000	공기 청정기	높이 1m이상	4,000
				높이 1m미만	2,000
장농	120cm장 1쪽	10,000	장롱 (쪽당)	120cm 이상	10,000
	120cm미만장 1쪽	7,000		90cm 이상	9,000
					90cm 미만
쇼파 (응접세트)	1인용 의자	5,000	현행과같음		
	2인용 의자	7,000			
	3인용 의자	9,000			
	4인용 의자	10,000			
	테이블	3,000			
책상	편수, 소형	5,000	책상	편수, 소형	5,000
	양수, 대형	6,000		양수, 대형	6,000
	의자	4,000		상판	3,000
의자				4,000	

연행			개정		
품명	규격	수수료 (원)	품명	규격	수수료 (원)
식탁	6인용이상	6,000	현행과같음		
	6인용미만	5,000			
피아노	그랜드	15,000			
	어프라이트	10,000			
장식장	모든 규격	5,000	장식장 (차단스)	모든 규격	5,000
문갑	모든 규격	5,000	현행과같음		
화장대	모든 규격	5,000	화장대	모든 규격(일반)	5,000
				영업용(미용실용)	10,000
침대	1인용	10,000	침대	1인용(매트리스1개)	10,000
	2인용	12,000		2인용(매트리스1개)	12,000
	1인용매트리스	7,000		1인용매트리스	7,000
				2인용매트리스	8,000
	2인용매트리스	8,000		1인용 침대틀	3,000
		2인용 침대틀		4,000	
신발장	모든 규격	5,000	신발장	모든 규격	5,000
파일캐비넷	4단이상	5,000	파일캐비넷	서랍식4단이상	5,000
	3단이하	4,000		서랍식3단이하	4,000
캐비넷	모든 규격	5,000	현행과같음		
오르간	모든 규격	6,000			
서랍장	5단이상	7,000			
	5단미만	5,000			
난방기구	모든 규격	4,000	난방기구	모든 규격	4,000
(신설 :세분화)			가습기	모든규격	2,000
			다리미	모든규격	2,000
			다리미판	모든규격	1,000
			돛자리	2.5m 이상	5,000
				2.5m 미만	3,000

연 행			개 정		
품 명	규 격	수수료 (원)	품 명	규 격	수수료 (원)
(신설:세분화)			리닝머신	모든규격	8,000
			문 짝	철재	5,000
				목재	4,000
			믹서기	모든규격	2,000
			벽시계	대(입식)	5,000
				소(일반)	3,000
			변기,세면기	모든규격	5,000
			병풍	모든규격	5,000
			보일러	모든규격	6,000
			비디오	모든규격	3,000
			빨래건조대	모든규격	2,000
			선풍기	모든규격	3,000
			스탠드	모든규격	2,000
			스피커	대	3,000
				소	2,000
			식기건조기	모든규격	3,000
			싱크대	대(개수대포함)	5,000
				소	4,000
			쌀통	모든규격	4,000
			아이스박스	대(1m 이상)	4,000
				중(1m미만)	3,000
				소(0.5m미만)	2,000
			액자	대	5,000
				중	3,000
				소	2,000
			토스터기	모든규격	2,000

연 행			개 정		
품 명	규 격	수수료 (원)	품 명	규 격	수수료 (원)
(신설:세분화)			어 항	대(2m이상)	8,000
				중(1.5m이상)	5,000
				소(1m미만)	3,000
			오디오	대	5,000
				중	4,000
				소	3,000
				오디오,TV대	3,000
			오락기	대	10,000
				중	8,000
				소	5,000
			옥돌,자석요	모든규격	10,000
			옥조	재질(돌)	10,000
				재질(플라스틱)	5,000
			유모차,보행기	모든규격	3,000
			의자	모든규격	4,000
			자전거	대(어른용)	5,000
				소(어린이용)	4,000
			전기장판	모든규격	3,000
			장판	5m 이상	5,000
				5m 미만	4,000
			전기밥통	모든규격	3,000
			거울	전신거울(대)	3,000
				일반거울(소)	2,000
			전자레인지	모든규격	3,000
			책꽂이	3단이상	4,000
				3단미만	3,000

현 행			개 정		
품 명	규 격	수수료 (원)	품 명	규 격	수수료 (원)
(신설:세분화)			청 소 기	모든규격	3,000
			카펫트	대(길이 2.5m 이상)	12,000
				소(길이 2.5m 미만)	7,000
			컴퓨터	모니터	3,000
				본체	2,000
				키보드	1,000
				프린터	2,000
				컴퓨터책상	4,000
			항아리	대	5,000
				중	3,000
				소	2,000
			유리	식탁 및 책상유리	3,000

※ 상기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별지 제6호서식]- 현 행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 태 료 처 분 및 납 부 통 지 서							
발 행 번 호	제 호	회계 년도		세입 과목		계좌 번호	
위 반 행 위 자	성명		주 소				
과 태 료 금 액	원	납부기간	년 월 일까지	납부장소			
위 반 일 시			위반내용				
위 반 법 률	폐기물관리법 제 조	발부일자	. . .	의 견 진 술 기 간	까지		
위반행위자서명		주 민 등 록 번 호		단속공무원 확인			
특 기 사 항							

(을)				(처분기관 보관용)			
과 태 료 처 분 및 납 부 통 지 서							
발 행 번 호	제 호	회계 년도		세입 과목		계좌 번호	
위반행위자	성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년 월 일까지	납부장소			
위 반 일 시			위반내용				
위 반 법 률	폐기물관리법 제 조	발부일자	. . .	의 견 진 술 기 간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주 민 등 록 번 호		단속공무원 확인			
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							

(병)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납부의무자	성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년 월 일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부인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					

(정)				(개인통지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납부의무자	성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년 월 일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168mm×118mm(인쇄용지(특급)34g/m²)

(무)		(인천광역시남동구청 통보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필 통 지 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 년도		세입 과목		계좌 번호					
납부 의무자	성명		주 소								
과태료 금액	원	납부 기간	년 월 일까지	납부 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 일부인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귀 하									

※ 주 : 갑·을·병·정 표의 “발행번호~계좌번호”란 · “위반행위자~주소”란 · “과
태료 금액~납부장소”란의 뒷면에 먹지부착 인쇄

168mm×118mm(인쇄용지(특급)34g/m²)

[별표3] - 현행

폐기물봉투가격 등의 산정 방법(제9조제2항 관련)

□ 규격봉투 가격의 산정

$$\text{봉투가격}(\ell \text{ 당}) = [(\text{총비용} \times \text{수수료자립도 } 0.55 \sim 1) \div (\text{년간처리량(kg)} \div \text{환산계수 } 0.4)] \\ + \text{판매수수료} + \text{봉투제작비}$$

주)1) 총비용

○ 기 준

○ 총비용 구성내역 : 대행료, 반입료, 무단투기폐기물처리비

2) 수수료 자립도(0.55~1)

수수료의 자립도를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향상

년도별 자립제고목표

년 도	1999	2000	2001	2002
자립도(%)	55	70	85	100

3) 연간 처리량

○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기준

○ $\text{kg} \div \text{환산계수 } 0.4$ 는 무게단위를 부피단위(ℓ)로 환산하여 봉투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산식

4) 판매수수료는 9%를 적용

5) 봉투제작비는 폐기물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 가정사업계용 봉투 가격의 산정

$$\text{봉투가격}(125\ell) = \frac{(\text{총비용} \times 0.6)}{\text{처리비용}} + \text{판매수수료} + \text{봉투제작비}$$

주)1) 처리비용

- 통상 무단투기된 사업폐기물 처리시 구청장과 처리업체와의
처리금액의 60% 수준으로 정함.

2) 판매수수료는 9%를 적용

3) 봉투제작비는 폐기물봉투 제작단가를 말함.

□ 대형폐기물 판매수수료 및 판매소 공급가격

- 판매수수료는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9%로 한다.
-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소 공급가격 =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 판매수수료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7 - 312호

공 고 문

인천광역시남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남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공개 명단

구분	분 야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위촉일	비고
실무협의체 위 원	사회복지시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이명숙	여	2007. 3.16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7 - 316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논현동 공원 정비공사
- 공사위치 : 남동구 논현동 563-1번지(사리울공원외 3개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공사개요
 - 시설물공 ----- 조합놀이대3식, 그네2식, 체육시설9식, 의자2식, 안내판3식 등
 - 포장공 ----- 고무칩542.6㎡, 점포벽돌229.7㎡, 경계석50.4m 등
 - 식재공 ----- 영산홍외 1종 900주
- 설계금액 : ₩262,746,000원(추정가액 238,860,000원 부가가치세 23,886,000원)
- 기초금액 : ₩262,746,000원(금이억육천이백칠십사만육천원정)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7년 03월 28일(수) 11:00~ 04월 06일(금)13:00
-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7년 04월 06일(금) 14:00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는 전자입찰로 우리구의 전자계약 추진계획에 따라 전자계약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내에 주된 사업소를 갖추고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조정 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소지업체로 합니다.

4.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262,746,000)의 $\pm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이 중 투찰자에 의해 다 빈도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7.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 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19호, 2006. 10. 27)에 의거 수행능력 평가점수와 가격입찰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2005년도말 경영상태 평가 기준 : 부채비율 90.03% 유동비율 189.10%

8.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 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 경리팀(032-453-2262) 또는 도시정비

공원팀(032-453-2852)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인터넷 홈페이지(<http://namdong.incheon.kr>)의 입찰 공고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07년 03월 27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 - 320호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 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3.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공원등 유지보수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주민편익 도모를 위해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3. **주요개정내용**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목적사업) 제8호 공원등(公園燈)유지관리사업 추가

4. **의견제출**

이 조례 안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7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경영재정과)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453 - 2252)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3조(목적사업)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원등(公園燈) 유지관리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 및운영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제23조(목적사업) 공단은 제1조의 규정 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23조(목적사업) ----- ----- -----.
1. ~ 7. (생략) (신설)	1. ~ 7. (현행과 같음) 8. 공원등(公園燈) 유지관리사업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가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내지 4. (생략)
5. 사업에 관한 사항

제23조(목적사업)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사업
2.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장 관리 운영사업
3. 청사시설 관리 운영사업
4. 만수근린공원 문화체육시설 관리 운영사업
5. 쓰레기본투 대행판매 사업
6. 해수공급시설 관리 운영사업
7. 보안등 유지관리사업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7 - 321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간경과안내(독촉)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의6(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독촉 등)의 규정에 의거, 기간내에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기간경과안내(독촉)를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장기간 방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07. 3. 28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공고기간** : 2007. 3. 28 ~ 2007. 4. 10
2. **송달내역** : 백돈기(인천80더9843) 등 5건 (별첨 명단 참조)
3.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의6
4. 상기 공고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 교통안전공단산하 검사소 및 민간지정업체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유효기간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밀검사 기간을 경과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기간경과 일수를 산정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6. 정밀검사 미수검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의하여 과태료(50만원 이하)가 부과되며,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환경위생과 (☎032-453-2655). 끝.

정밀검사 독촉안내 공시송달(2007.3.28)

순번	등록 번호	유효기간 만료일	소유자명	우편번호	주 소	비 고
1	인천80터 9843	20061120	백돈기	405-3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30번지 산업용품상가 B동 103-104	
2	인천31라 5909	20061226	이상수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23번지 26/3 금원아파트 나동 102호	
3	05조4390	20070115	민경빈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16번지 6호 34/2 범양아파트 105동 302호	
4	인천31마 1756	20070115	안영균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7번지 20/5 주공아파트 502동 103호	
5	인천31두 1569	20070131	(주)성도주택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770번지 8호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7 - 322호

운행차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과태료부과)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 불가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의견제출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7. 3. 28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공고기간 : 2007. 3. 28 ~ 2007. 4. 10
2. 의견제출기간 : 2007. 4. 24일까지.
3. 송달내역 : (유한)대송부동산정보(인천30러9652) 등 25건(별첨 명단 참조)
4. 기타 : 의견제출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환경위생과(☎ 032-453-2655) 끝.

(35)2007.2.2~2007.3.1 정밀검사사전통지공시승달(2007.3.28)

순번	등록 번호	유효기간 만료일	소유자명	우편 번호	주소	지연일자	금액	비고
1	인천30려 9652	20061012	(유한)대송부동산정보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74번지 7호 명진탑스빌 A-201	88	300000	
2	27두3736	20061018	오세철(상품용)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16번지 85호	89	300000	
3	인천31노 8270	20061004	남해토건(주)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번지 58호	96	300000	
4	05보7588	20061005	(주)하나정밀	405-3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42번지 11호	95	300000	
5	인천31노 6577	20060924	(주) 총무	405-3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30번지 공구상가 비-309	106	300000	
6	86려3352	20061015	정기선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15번지 29호 3/5	87	300000	
7	인천70거 9297	20061015	(주)한신정보통신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92번지 4호 원빌딩401호	87	300000	
8	86려3251	20061005	(주)물가람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83번지 3호 진영프라자 4층	95	300000	
9	인천80터 8537	20061015	장현철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11번지 33호 8/ 4 삼화빌라 C동 101호	87	300000	
10	인천80터 8376	20061011	다산조경주식회사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86번지 3호	89	300000	
11	인천80려 9940	20061013	(주)맥디자인	405-1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11번지 8호 남동공단 35B-9L	87	300000	
12	인천31노 9853	20061015	(주)오성에프엔에프	405-3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57번지	87	300000	
13	인천80머 4511	20061202	삼포화학공업주식회사	405-3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81번지 5호	51	120000	
14	인천80터 8444	20061014	(주)오성열처리	405-3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81번지 8호	87	300000	
15	인천80터 7795	20060920	(주)하나정밀	405-3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42번지 11호	110	300000	
16	인천82다 3771	20060921	(주)하이테크전자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29번지 9호	109	300000	
17	인천34너 6742	20061030	장근철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7번지 255호 백양아파트A-403	88	300000	
18	인천80고 4579	20070106	황상기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64번지 7호 7/1 101호	6	20000	
19	인천31도 2769	20061027	국경규(공채면제)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05번지 효성상아맨션 7-1203	87	300000	
20	인천81다 1033	20061207	이영대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35번지 21호 4/5 칠성대세대주택 C동 202호	32	20000	
21	인천81라 6644	20061018	김희수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60번지 8/1 경원목재	89	300000	
22	인천82라 2341	20061104	염상섭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60번지 7호 8동1만	83	280000	
23	인천34너 5913	20061010	안승희 외1인(안승모)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48번지 금호아파트 101-1705	90	300000	
24	인천30허 6766	20061023	태양랜트카(주)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6번지 14호 벤처빌딩 505호	89	300000	
25	02터8696	20061013	이혜진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03번지 41호 12/2 우리마을빌라 4동 203호	87	300000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7 - 323호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 독촉(체납)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52조제4항(과태료부과징수절차)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미납부자에게 납부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07. 3. 28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공고내역**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자 및 내역** : 안혜련(27두8542) 등 5건 (별첨 명단 참조)
3. **공고기간** : 2007. 3. 28 ~ 2007. 4. 10
4. **납부장소** : 인천광역시내 시중은행 및 우체국
5.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 및 동법 제59조제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납부고지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발급 받아야 하며,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환경위생과 (☎ 032-453-2655) 끝.

정밀검사과태료독촉공시송달(2007.3.28)

순 번	부서명	과목명	납부자 성명	부과일자	부과금액	물건명	우편 번호	주소	비고
1	환경위생과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안혜련	2007-01-18	300000	27두8542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5번지 2호 49통 2반 두원파크빌라 105동 404호	
2	환경위생과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고홍인	2007-01-18	300000	인천31두 3049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97번지 19호 28통 2반 조록마을 B동 504호	
3	환경위생과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조중실	2007-01-18	300000	인천30마 3457	445-940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680번지 4통	
4	환경위생과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최창섭	2007-01-18	20000	인천80거 1017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5번지 373호 17통 4반 성신아파트 4동 106호	
5	환경위생과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신현숙	2007-01-18	300000	인천31고 5492	405-84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356번지 5호 8통 3반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7 - 324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 기간경과안내(독촉) 공시송달 공고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기간 내에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를 받도록 차량의 소유자에게 기간 안내(독촉)를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7. 3. 28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공고기간** : 2007. 3. 28 ~ 2007. 4. 10
2. **송달내역** : 최영동(인천80년9089) 등 3건 (별첨 명단 참조)
3. **관련법규**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4. 상기 공고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 교통안전공단산하 검사소 및 민간지정업체에서 특정경유차 배출가스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5. 특정경유차 배출가스검사는 유효기간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간을 경과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기간경과 일수를 산정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6. 특정경유차 배출가스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아니하거나 기준부적합차량이 저감장치부착, 개조, 조기폐차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환경위생과 (☎032-453-2655). 끝.

특정경유차독촉안내공시송달(2007.3.28)

순번	등록번호	유효기간 만료일	소유자명	우편번호	주소	비고
1	인천80너9089	20061114	최영동	405-3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34번지 3호 건설천막	
2	인천80더9568	20061230	송은성	405-3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28번지 7호 남동공단 67B-8L	
3	인천1고7088	20070125	유기택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58번지 20/5 팬더아파트 8동 801호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7 - 325호

특정경유차 배출가스검사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2항(특정경유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46조1항제2호(과태료부과)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의견 제출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7. 3. 28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공고기간 : 2007. 3. 28 ~ 2007. 4. 10
2. 의견제출기간 : 2007. 4. 24일까지.
3. 송달내역 : (유한)대송부동산정보(86노3144) 등 22건(별첨 명단 참조)
4. 기타 : 의견제출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환경위생과 (☎ 032-453-2655)끝.

2007.2.2~2007.3.1 특정경유차사전통지공시충달(2007.3.28)

순번	등록 번호	유효기간 만료일	소유자명	우편번호	주소	지연 일자	금액
1	86노3144	20061031	(유한)대송부동산정보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74번지 7호 명진탑스빌 A-201	87	600000
2	86보5952	20060930	김성길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35번지 6호 4/2	100	600000
3	인천80나 7842	20061006	성미목제산업(주)	405-3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57번지 남동공단111브릭1롯데	94	600000
4	인천86가 5692	20060915	진성환경개발(주)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70번지 23호	115	600000
5	인천98아 2509	20060704	(주)세진티앤씨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05번지 24호 2층	14	40000
6	인천82다 3596	20061017	(주)한맥디자인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558번지 4호	87	600000
7	인천80너 7158	20061021	(주)티엠테크	405-1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26번지 7호	87	600000
8	인천81라 1249	20061209	문정현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11번지 29호 8/ 5 연수주택 A동 102호	36	90000
9	인천80너 2586	20060918	박성원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01번지 160호 26/3 부원주택 402호	112	600000
10	인천80너 5084	20061007	(주)삼전사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47번지 11호	93	600000
11	인천80너 4515	20061008	(주)금강하이닉스	405-3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06번지 8호 남동공단 135블럭9롯데	92	600000
12	인천80너 6576	20060925	협성전기건설(주)	405-3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18번지 12호 남동공단 143B-14L	105	600000
13	86서5573	20060929	이기재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893번지 1호 26/6 우성아파트 11동 1206호	101	600000
14	인천80너 4006	20060929	양영애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42번지 2호 14/1	101	600000
15	인천82나 3465	20060923	이창환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18번지 7/2 대동아파트 102동 303호	107	600000
16	인천80너 3231	20061019	강정봉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351번지 16호 4/ 5	88	600000
17	인천83다 4817	20061031	김용주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07번지 18호 20/2 1층동	87	600000
18	인천80너 4106	20061022	양명석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7번지 205호 16/3 청산빌라 나동 301호	90	600000
19	인천32고 3849	20061101	심용흠	405-3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08번지 3호 137블럭4롯데 19/4	87	600000
20	26누1916	20061201	육일토건(주)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2번지 44호 3층	49	220000
21	인천80너 3396	20060929	김만중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10번지 45호 14/4	101	600000
22	인천80너 3827	20060926	유명숙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번지 259호	104	600000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7 -326호

특정경유차 배출가스검사 과태료독촉 공시송달 공고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5조제2항(특정경유차 배출가스검사) 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동법 제46조제1항제2호(과태료부과)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07. 3. 28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공고내역** : 특정경유차 배출가스검사 과태료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자 및 내역** : 신우환경(주)(86보9263) 등 12건 (별첨 명단 참조)
3. **공고기간** : 2007. 3. 28 ~ 2007. 4. 10
4. **납부장소** : 인천광역시내 시중은행 및 우체국
5. **근거법규**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5조제2항 및 동법 제46조제1항 제2호
6. 납부고지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발급 받아야 하며,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환경위생과 (☎ 032-453-2655) 끝.

특정경유차과태료독촉공시송달(2007.3.28)

부서명	과목명	납부자성명	부과 일자	부과 금액	물건명	우편 번호	주소	비고
환경위생과	특정경유자동차 차검사위반 과태료	신우환경(주)	2007-01-29	320000	86보9263	405-3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30번지남동공단산업유통상가 A-343	
환경위생과	특정경유자동차 차검사위반 과태료	임형일	2007-01-29	600000	인천80미 1312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29번지 2통 4반 주공아파트 116동 103호	
환경위생과	특정경유자동차 차검사위반 과태료	김유근	2007-01-29	600000	인천80거 5403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산 14번지 1호 11통 2반	
환경위생과	특정경유자동차 차검사위반 과태료	영성필터(주)	2007-01-29	600000	인천80더 3623	405-3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10번지 7호 남동공단 139-8	
환경위생과	특정경유자동차 차검사위반 과태료	김선경	2007-01-29	600000	91가6410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503번지 24통 1반	
환경위생과	특정경유자동차 차검사위반 과태료	(주)대형농산	2007-01-29	600000	인천82다 2730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46번지 13호	
환경위생과	특정경유자동차 차검사위반 과태료	김백성	2007-01-29	600000	인천80너 8084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7번지 240호 22통 2반 새빛하이츠빌라 301호	
환경위생과	특정경유자동차 차검사위반 과태료	광덕기업(주)	2007-01-29	600000	인천82다 7067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28번지 9호	
환경위생과	특정경유자동차 차검사위반 과태료	태봉에너지기술(주)	2007-01-29	600000	인천35더 3011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27번지 5호 16블럭 6롯데	
환경위생과	특정경유자동차 차검사위반 과태료	태영도장건설(주)	2007-01-29	40000	인천32나 9929	405-3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31번지공공상가 D-360	
환경위생과	특정경유자동차 차검사위반 과태료	(주)하나금속	2007-01-29	600000	인천82가 5797	405-3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25번지 2호	
환경위생과	특정경유자동차 차검사위반 과태료	(유한)대송부동산정보	2007-01-29	600000	인천81가 2610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74번지 7호 명진탑스빌 A-201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7 - 327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인가(비관리청)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명 : 도시계획도로(중로2-24호선, 중로2-25호선, 소로3-16호선, 소로3-00호선 폭원 확장 및 신설공사)사업을 시행 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공람을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032-453-296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당해 도로개설 시행지구 주변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내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3. 30.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의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3-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24, 중로2-25, 소로3-16, 소로3-00)]
- (2) 명 칭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중로 2-24호선 : 폭원(B)=15~22.9m, 연장(L)=1,500m중 501m
- 중로 2-25호선 : 폭원(B)=15~24.1m, 연장(L)=2,550m중 911m
- 소로 3-16호선 : 폭원(B)=4m, 연장(L)=88.75m

- 소로 3-00호선 : 폭원(B)=5~12m, 연장(L)=123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구월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 (2) 주 소 : 남동구 구월동 1241-17번지 3층

5.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7. 4. ~ 2007. 8.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7.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8. 열람기간 : 열람일로부터 20일간

9. 첨 부 : 관계도서(게재 생략)



시설별 편입 토지 조서

(중로2-24호선)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내용
1	남동구 구월동	20-2	대	2,823	540	구월주공아파트 소유자지분 공유		-	-	
2	남동구 구월동	23-2	대	9,763	3,189	구월주공아파트 소유자지분 공유				
계					3,729					

(중로2-25호선)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내용
1	남동구 구월동	23-2	대	9,763	4,618.1	구월주공아파트 소유자지분 공유		-	-	
2	남동구 구월동	24-6	대	5,205.9	3,196.9	구월주공아파트 소유자지분 공유		-	-	
계					7,815					

(소로3-16호선)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내용
1	남동구 구월동	24-3	대	355	355	구월주공아파트 소유자지분 공유		-	-	

(소로3-00호선)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내용
1	남동구 구월동	20-2	대	2,823	775	구월주공아파트 소유자지분 공유		-	-	

인천광역시남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07 - 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윤태진 외 14명의 정기재산 변동사항(2006,12,31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 남동구청장 윤태진 외 14명의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2007년 3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

소속	인천광역시 남동구		직위	구청장		성명	윤태진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천원)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 토지 (소계)			695,741	158,879	0	854,620	
배우자	임야	전남 고흥군 두원면 관덕리 산 93-3번지 11,072.00㎡	3,543	841	0	4,384	가액변동
부	전	인천 남동구 도림동 495-1번지 1,105.00㎡ (1,233.00㎡ 감소)	106,024	26,576	0	132,600	가액변동
부	전	인천 남동구 도림동 494-1번지 410.00㎡	17,481	31,719	0	49,200	가액변동
부	임야	인천 남동구 도림동 28-4번지 5,668.00㎡	214,250	38,542	0	252,792	가액변동
부	임야	인천 남동구 도림동 28-10번지 8,399.00㎡	333,440	52,914	0	386,354	가액변동
부	임야	인천 남동구 도림동 28-11번지 374.00㎡	14,847	2,693	0	17,540	가액변동
부	임야	전남 고흥군 두원면 관덕리 산 93-1번지 10,001.00㎡	3,200	630	0	3,830	가액변동
부	전	인천 남동구 도림동 495-2번지 66.00㎡	2,956	4,964	0	7,920	가액변동
▶ 건물 (소계)			363,522	263,390	0	626,912	
배우자	전세 (임차)권	인천 남동구 남촌동 풍림아파트 건물 109.79㎡	95,000	-	-	95,000	-
부	목조	인천 남동구 도림 대지 1,891.00㎡ 건물 183.30㎡	268,522	263,390	0	531,912	가액변동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소계)							
본인	자동차	년식 '00 매그너스, 1998 인천35가5305, 가액7,000천원	-	-	-	-	-
▶ 예금 (소계)			120,279	121,717	96,668	145,328	
본인		한미은행 18,666(3,051 증가), 씨티은행(국내) 52,279(46,247 증가)	21,647	52,523	3,225	70,945	임대 및 이자 수익
배우자		농협 913(722 증가), 교보생명보험 4,137(3,418 감소), 삼성생명보험 0(8,507 감소)	16,253	1,407	12,610	5,050	
부		농협 184(7,082 감소)	7,266	0	7,082	184	
모		농협 56,362(18,751 감소)	75,113	55,000	73,751	56,362	
장남		교보생명보험 12,787(12,787 증가)	0	12,787	0	12,787	
▶ 채무 (소계)			498,000	457,000	470,000	485,000	
본인	금융기관 채무	농협 20,000, 한미은행 8,000(11,000 감소)	39,000	0	11,000	28,000	일부금액 상환
부	금융기관 채무	농협 457,000(2,000 감소)	459,000	457,000	459,000	457,000	일부금액 상환
총 계			681,542	86,986	-373,332	1,141,860	증감액: 460,318 (가액변동: 422,399)

소속	인천광역시 남동구		직위	구의원		성명	윤창렬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천원)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 토지 (소계)			967,761	851,013	90,300	1,728,474	
본인	답	인천 남동 만수 590번지 4,271.00㎡	328,867	410,016	0	738,883	가액변동(답에서 전 으로 지목변경 요)
본인	답	인천 남동 장수 538번지 1,024.00㎡	368,640	205,067	0	573,707	가액변동(답에서 대지 로 지목변경 요)
본인	답	인천 남동 장수 626-1번지 160.00㎡	17,440	7,520	0	24,960	가액변동(답에서 전으 로 지목변경 요)
본인	답	인천 남동 장수 626-2번지 1,957.00㎡	152,646	152,646	0	305,292	가액변동(답에서 전으 로 지목변경 요)
본인	답	인천 남동 장수 626-5번지 384.00㎡	9,868	75,764	0	85,632	가액변동(답에서 전으 로 지목변경 요)
본인	답	인천 남동 장수 538-4번지 0.00 ㎡ (258.00㎡ 감소)	90,300	-	90,300	0	(답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 요) 장수동538-3 번지 건물분에 이기 (환지에정지)
▶ 건물 (소계)			377,369	76,824	0	454,193	
본인	철골슬라브 상가주택	인천 남동 장수 대지 393.20㎡ 건물 494.88㎡ (대지 127.20㎡ 증가)	377,369	76,824	0	454,193	환지에정지 면적 및 가 액수정(장수동538-4 토지포함)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 박 및 항공기 (소계)							
본인	자동차	년식 '94소나타2.0폴트,1977 인천4너1015 (취득가액10,000천원)	-	-	-	-	
▶ 예금 (소계)			11,382	8,731	0	20,113	
본인		농협 9,753(5,639 증가)	4,114	5,639	0	9,753	모친 보통예금,인천시 군구의회의장협의회의 회비
배우자		농협 944, 금호생명보험 6,324	7,268	-	-	7,268	
모		농협 3,092(3,092 증가)	0	3,092	0	3,092	
▶ 채무 (소계)			20,000	15,000	15,000	20,000	
본인	건물임대채 무	인천 남동 장수	5,000	-	-	5,000	
본인	금융기관채 무	농협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총 계			1,336,512	921,568	75,300	2,182,780	증 감 액 : 846,268 (가액변동: 851,013)

소속	인천광역시 남동구		직위	구의원		성명	국중일
(단위 : 천원)							
본인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천원)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 건물 (소계)			137,357	4,688	0	142,045	
본인	상가	인천 남동 만수 80-338번지, 대지 94㎡, 건물 121.15㎡	137,357	4,688	-	142,045	가액변동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 건 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 (소계)							
본인	자동차	1997년식 라노스 1.5cc 인천31노3420(취득가액 2,000천원)	-	-	-	-	
본인	자동차	2003년식 오피러스 3000cc 인천32터7041(취득가액41,500천원)					
▶ 예금 (소계)			144,930			144,930	
본인		한빛은행(국내) 1,143, 우리은행(국 내)4,257, 교보생명보험 14,051, 새마을금고 2,574, 새마을금고 100,000	122,025			122,025	
배우 자		농협 2,459, 교보생명보험 636 대 한생명보험 5,101, 삼성생명보험 30 0, 알리안츠제일생명보험 5,132, 우 체국 9,277	22,905			22,905	
▶ 채무 (소계)			88,310	0	0	88,310	
본인	금융기 관채무	외환은행(국내) 68,310	68,310	-	-	68,310	
본인	건물임 대채무	인천 남동 만수 80-338번지 임대(전세)보증금 2건	20,000	-	-	20,000	
총 계			193,977	4,688	-	198,665	※순증감액: 4,688천 원(가액변동)

소속	인천광역시 남동구		직위	구의원		성명	이강호
(단위 : 천원)							
변동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천원)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 건물 (소계)			155,000	0	0	155,000	
배우자	아파트	인천 남동구 서창동 태평아파트 건물 79.20㎡	85,000	-	-	85,000	가액변동없음
배우자	전세 (임차)권	인천 남동구 간석동 삼익목화아파트 건물 105.60㎡	70,000	-	-	70,000	임대보증금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 기계·선박 및 항공기 (소계)							
본인	자동차	2002년식 아반떼XD 배기량(1,498cc)	-	-	-	-	
▶ 현금 (소계)			10,000	7,500	0	17,500	
본인		현금	10,000	-	-	10,000	
배우자		현금 증가	0	7,500	0	7,500	월급저금
▶ 예금 (소계)			178,237	104,842	111,858	171,221	
본인		새마을금고 30,000(30,000 증가), AIG 생명보험 11,167(363 증가), 삼성생명 보험 2,700(2,700 증가)	10,804	33,063	0	43,867	정기예금 제예치 및 만기해지
배우자		농협 49,590, 국민은행 50,130(7,323 감소), 새마을금고 20,000(20,000 증가), AIG생명보험 5,144(219 감소), 교보생명보험 748(37 증가), 삼성생명보험 1,242(1,371 감소), 우리은행(국내) 0(51,703 감소)	167,433	71,279	111,858	126,854	
장녀		국민은행 500(500 증가)	0	500	0	500	
▶ 채무 (소계)			110,000	0	0	110,000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인천 남동구 서창동 태평아파트	60,000	-	-	60,000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농협 30,000, 우리은행(국내) 20,000	50,000	-	-	50,000	
총 계			233,237	112,342	111,858	233,721	증 감 액 : 484

소속	인천광역시 남동구		직위	구의원		성명	안희태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천원)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 건물 (소계)			49,000	0	10,000	39,000	
배우자	아파트	인천 남동구 간석동 신한아파트 건물 59.85㎡	49,000	0	10,000	39,000	가액변동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 건설 기계 · 선박 및 항공기 (소계)							
본인	자동차	1995년식 아반떼 배기량(1,495cc)	-	-	-	-	
본인	자동차	2001년식 비스토 배기량(798cc)	-	-	-	-	
▶ 예금 (소계)				25,200		25,200	
본인		농협 13,741(13,741 증가)	0	13,741	0	13,741	보험가입으로따른 증대
배우자		농협 9,168(9,168 증가)	0	9,168	0	9,168	
모		농협 1,291(1,291 증가)	0	1,291	0	1,291	
장남		간석새마을금고 541(541 증가)	0	541	0	541	
장녀		간석새마을금고 459(459 증가)	0	459	0	459	
▶ 채무 (소계)				46,462		46,462	
본인	금융기 관채무	농협 1,015(1,015 증가), 국민은행 2,729(2,729 증가)	0	3,744	0	3,744	대출
배우자	금융기 관채무	국민은행 718(718 증가), 하나은행 42,000(42,000 증가)	0	42,718	0	42,718	대출
총 계			49,000	-21,262	10,000	17,738	증 감 액 : -31,262 (가액변동: -10,000)

소속	인천광역시 남동구		직위	구의원		성명	김승태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천원)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 토지 (소계)				45,000		45,000	
본인	대지	인천 남동구 구월3동 1106-4번지 102.00㎡	0	45,000	0	45,000	건물매도후 입차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 기계·선박 및 항공기 (소계)							
장남	자동차	2003년식 쏘렌토 배기량(2,497cc) 증가	-	- (25,544)	-	-	2006.8.21취득
▶ 현금 (소계)			60,000	0	0	60,000	
본인		현금	60,000	-	-	60,000	
▶ 유가증권 (소계)			20,000	0	0	20,000	
본인	상장주식	한진정보통신 2,000주	20,000	-	-	20,000	비상장주식
▶ 채무 (소계)			84,000	0	84,000	0	
본인	건물임대 채무	인천 남동 구월3 3건 임대보증금 감소	84,000	0	84,000	0	임대보증금상환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소계)							
본인	출자	한진정보통신, 연간매출액: 6,500,000천원 출자지분 : 40.00%	0	-	-	-	
총 계			-4,000	45,000	-84,000	125,000	증 감 액 : 129,000

소속	인천광역시 남동구		직위	구의원		성명	장석호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천원)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 건물 (소계)			350,000	116,000	54,917	411,083	
본인	빌딩	인천 남동구 간석동 대지 223.70㎡ 건물 494.94㎡	350,000	0	54,917	295,083	가액변동
장남	전세 (임차)권	대전 동구 용운 건물 0.00㎡ (건물 0.00㎡ 감소)	0	-	-	0	만기계약해지
장남	아파트	인천 남동구 간석동 우성아파트 대 지 44.91㎡ 건물 84.97㎡	0	116,000 (143,000)	0	116,000	2006.8.29 취득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 건설 기계 · 선박 및 항공기 (소계)							
본인	자동차	년식 '94겔로퍼승합배기량2476 인천5더2191(취득가액17,000)	-	-	-	-	
▶ 예금 (소계)			69,809	37,620	52,165	55,264	
본인		한미은행 1,921, 새마을금고 10,25 6(30,273 감소)	42,450	9,092	39,365	12,177	해약에 따른 변동
배우자		농협 4,310, 한미은행 163, 새마을 금고 33,614(23,528 증가)	14,559	23,528	0	38,087	
장남		새마을금고 5,000(7,800 감소)	12,800	5,000	12,800	5,000	
▶ 채무 (소계)			63,000	100,000	13,000	150,000	
본인	건물임대 채무	인천 남동구 간석동 4건 임대보 증금 감소	63,000	0	13,000	50,000	만기계약
장남	건물임대 채무	인천 남동구 간석동 우성아파트 임대보증금 증가	0	100,000	0	100,000	임대계약
총 계			356,809	53,620	94,082	316,347	증 감 액 : -40,462 (가액변동: -54,917)

소속	인천광역시 남동구		직위	구의원		성명	김정학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천원)		현 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 토지 (소계)			102,412	275,154	43,841	333,725	
본인	임야	경기 포천시 화현면 196번지 6,396.00㎡	29,101	34,475	0	63,576	가액변동
본인	답	경기 포천시 화현면 198-2번지 0.00 ㎡ (5,478.00㎡ 감소)	29,526	-	29,526 (42,947)	0	2004년9월15일공유자전 원지분전부이전 매도
본인	도로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190-2번지 0.00 ㎡ (165.00㎡ 감소)	225	-	225 (2,821)	0	2005년2월18일남양주시 로 공유지분 이전 매도
본인	전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190-4번지 3,206.00㎡	28,670	237,748	0	266,418	가액변동
본인	도로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190-5번지 0.00 ㎡ (397.00㎡ 감소)	542	-	542 (6,788)	0	2005년2월18일지분 남양 주시로 공유전부이전 매도
본인	전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190-6번지 0.00 ㎡ (1,515.00㎡ 감소)	13,548	-	13,548 (133,168)	0	2005년2월18일남양주시로 공유지분 전부이전 매도
부	답	경기 포천 화현 명덕리 199번지 182.00㎡	800	2,931	0	3,731	가액변동
▶ 건물 (소계)			23,634	42,754	0	66,388	
배우자	빌라	인천 남동 간석 대박빌라 대지 17.09㎡ 건물 42.89㎡	15,105	16,895	0	32,000	가액변동
부	농어가주택	경기 포천 화현 명덕리 건물 96.36㎡	8,529	25,859	0	34,388	가액변동(건물분만소유)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 (소계)							
본인	자동차	년식 '99카렌스LPG배기량1793CC인원70거8152(취득가액10,200천원)	-	-	-	-	
장남	자동차	년식 '02 카렌스LPG 1793CC, 인천32머4186	-	-	-	-	
▶ 예금 (소계)			7,743	2,183	0	9,926	
본인		삼성생명보험 1,471(215 증가)	1,256	215	0	1,471	보험료납입
배우자		삼성생명보험 4,124(603 증가)	3,521	603	0	4,124	
장녀		삼성생명보험 4,331(1,365 증가)	2,966	1,365	0	4,331	
▶ 채무 (소계)			114,500	0	7,000	107,500	
본인		사인간채무 감소	12,000	0	7,000	5,000	채무액일부변제
본인	금융기관 채무	새마을금고 10,000	10,000	-	-	10,000	
배우자	금융기관 채무	국민은행 44,482	44,482	-	-	44,482	
장남	금융기관 채무	국민은행 48,018	48,018	-	-	48,018	
총 계			19,289	320,091	36,841	302,539	증 감 액 : 283,250 (가액변동: 317,908)

소속	인천광역시 남동구		직위	구의원		성명	김영분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천원)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 건물 (소계)			290,000	90,000	42,000	338,000	
본인	상가	인천 연수구 옥련동 대지 312.30㎡ 건물 100.50㎡	200,000	0	13,000	187,000	가액변동
본인	아파트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학동지아파트 건물 56.16㎡	90,000	0	29,000	61,000	가액변동
본인	아파트 전세(임차)권	인천 남동구 논현동 단풍마을주공아파트 건물 84.00㎡	0	90,000	0	90,000	전세입주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 (소계)							
본인	자동차	2004년식 로디우스 배기량(2,696cc)	-	-	-	-	
본인	자동차	2001년식 그레이스 배기량(2,607cc)	-	-	-	-	
본인	자동차	1996년식 이스타나 배기량(2,874cc)	-	-	-	-	
▶ 예금 (소계)			61,900	38,174	14,118	85,956	
본인		국민은행 54,111(17,830 증가), 삼성생명보험 5,856(2,263 증가), 엘지화재해상보험 25,989(3,963 증가)	61,900	38,174	14,118	85,956	월불입액 증가
▶ 채무 (소계)			110,000	116,500	0	226,500	
본인	건물임대채무	인천 연수구 옥련동 임대보증금 증가	0	80,000	0	80,000	전세보증금
본인	건물임대채무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학동지아파트	10,000	-	-	10,000	
본인	금융기관채무	국민은행 36,500(36,500 증가), 우리은행(국내) 100,000	100,000	36,500	0	136,500	누락분
총 계			241,900	11,674	56,118	197,456	증 감 액 : -44,444 (가액변동: -42,000)

소속	인천광역시 남동구		직위	구의원		성명	채종철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천원)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 토지 (소계)			5,207	1,031	122	6,116	
본인	전	전남 완도군 금당면 육산리 140번지 278.00㎡	458	-	0	458	가액변동 없음
본인	전	전남 완도군 금당면 육산리 141번지 284.00㎡	468	-	0	468	가액변동 없음
본인	전	전남 완도군 금당면 육산리 567번지 370.00㎡	688	-	74	614	가액변동
본인	전	전남 완도군 금당면 육산리 568번지 225.00㎡	405	-	48	357	가액변동
본인	전	전남 완도군 금당면 육산리 128-6번지 49.00㎡	71	-	0	71	가액변동 없음
본인	전	전남 완도군 금당면 육산리 128번지 2,150.00㎡	3,117	-	0	3,117	가액변동 없음
본인	전	전남 완도군 금당면 육산리 165-3번지 1,742.00㎡ 중 793.30㎡	0	1,031	0	1,031	2006년12월13일 등기 매입
▶ 건물 (소계)			40,000	0	0	40,000	
본인	전세 (임차)권	인천 남동구 만수동 건물 99.00㎡	40,000	-	-	4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소계)							
본인	자동차	1995년식 프린스 배기량(1,796cc)	-	-	-	-	
▶ 예금 (소계)			41,431	0	0	41,431	
본인		국민은행 1,470, 금호생명보험 3,778, 삼성생명보험 10,560	15,808	-	-	15,808	
모		농협 1,572, 교보생명보험 24,051	25,623	-	-	25,623	
▶ 채무 (소계)			22,892	0	0	22,892	
모	금융기관 채무	국민은행 13,922, 교보생명보험 8,970	22,892	-	-	22,892	
총 계			63,746	1,031	122	64,655	증 감 액 : 909 (가액변동: -122)

소속	인천광역시 남동구		직위	구의원		성명	박강석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천원)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 건물 (소계)			50,000	0	23,000	27,000	
모	다세대 주택	인천 남동구 구월동 수인빌라 건물 131.76㎡	50,000	0	23,000	27,000	가액변동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 건 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 (소계)							
본인	자동차	1991년식 포터 배기량(1,000cc)	-	-	-	-	
부	자동차	2002년식 다마스 배기량(800cc)	-	-	-	-	
총 계			50,000	0	23,000	27,000	증 감 액 : -23,000 (가액변동: -23,000)

소속	인천광역시 남동구		직위	구의원		성명	권석규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천원)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 건물 (소계)			55,000	0	0	55,000	
본인	전세 (임차)권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지 156.90㎡ 건물 87.72㎡	55,000	-	-	55,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 (소계)							
본인	자동차	1995년식 그랜저 배기량(1,999cc)	-	-	-	-	
▶ 예금 (소계)			328,458	127,065	41,500	414,023	
본인		농협 358,856(70,398 증가)	288,458	70,398	0	358,856	- 국회의원 이윤성 후원회 회계책임자 로 후원금 증가 - 모친 정기적금 만 기로인한 계좌변경
모		농협 43,667(13,667 증가), 정보통신부(우체국) 11,500(1,500 증가)	40,000	56,667	41,500	55,167	
총 계			383,458	127,065	41,500	469,023	증 감 액 : 85,565

소속	인천광역시 남동구		직위	구의원		성명	이창근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천원)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 토지 (소계)			233,310	194,051	233,310	194,051	
본인	임야	인천 남동구 장수동 452번지 0.00㎡ (2,110.00㎡ 감소)	233,310	-	233,310 (233,310)	0	번지분할 변경(452-6,452-5, 452-1)
본인	답	인천 남동구 장수동 452-6번지 2,338.00㎡ 중 935.20㎡	0	96,325	0	96,325	분할지번으로 인한 추가등재
본인	전	인천 남동구 장수동 452-5번지 2,068.00㎡ 중 827.20㎡	0	85,201	0	85,201	분할지번으로인한 추가등재
본인	전	인천 남동구 장수동 452-1번지 307.00㎡ 중 122.80㎡	0	12,525	0	12,525	분할지번으로 인한 추가등재
▶ 건물 (소계)			346,280	17,000	108,616	254,664	
본인	연립 주택	인천 남동구 간석동 대지 21.25㎡ 건물 40.90㎡	17,000	-	-	17,000	가액변동없음
본인	상가	인천 남동구 남촌동 대지 36.16㎡ 건물 26.45㎡	9,514	-	-	9,514	가액변동없음
본인	상가	인천 남동구 남촌동 대지 36.16㎡ 건물 26.45㎡	9,514	-	-	9,514	가액변동없음
본인	상가	인천 남동구 남촌동 대지 36.16㎡ 건물 26.45㎡	9,514	-	-	9,514	가액변동없음
본인	상가	인천 남동구 남촌동 대지 0.00㎡ 건물 0.00㎡ (대지 18.01㎡ 감소, 건물 20.38㎡ 감소)	616	0	616 (616)	0	착오등재분 삭제
배우자	아파트	인천 남동구 남촌동 풍림아파트 건물 0.00㎡ (건물 96.18㎡ 감소)	80,000	0	80,000 (78,000)	0	2006.10.27 경매로 인한 매도
배우자	연립 주택	인천 남동구 남촌동 대지 0.00㎡ 건물 0.00㎡ (대지 9.94㎡ 감소, 건물 38.30㎡ 감소)	11,000	0	11,000 (20,000)	0	2006.3.1 매도
배우자	연립 주택	인천 남동구 남촌동 대지 10.43㎡ 건물 40.20㎡	12,000	-	-	12,000	가액변동없음
배우자	연립 주택	인천 남동구 남촌동 대지 0.00㎡ 건물 0.00㎡ (대지 9.94㎡ 감소, 건물 38.30㎡ 감소)	17,000	0	17,000 (17,000)	0	오류기재로 인한 삭제
배우자	상가	인천 남동구 남촌동 대지 462.09㎡ 건물 522.40㎡	180,122	-	-	180,122	가액변동없음
배우자	다세대주 택	인천 남동구 남촌동 대지 9.94㎡ 건물 38.30㎡	0	17,000	0	17,000	오류등재로 인한 추가등재
▶ 채무 (소계)			506,103	0	0	506,103	
본인	건물임대 채무	인천 남동구 남촌동 4건	14,000	-	-	14,000	
본인	금융기관 채무	농협 100,000	100,000	-	-	100,000	
배우자		사인간채무	200,000	-	-	200,000	
배우자	건물임대 채무	인천 남동구 남촌동 4건	75,000	-	-	75,000	
배우자	건물임대 채무	인천 남동구 남촌동 풍림아파트	30,000	-	-	30,000	
배우자	금융기관 채무	국민은행 19,463, 삼성생명보 험 13,340, 우리은행(국내) 5 4,300	87,103	-	-	87,103	
총 계			73,487	211,051	341,926	-57,388	증 감 액 : -130,875

소속	인천광역시 남동구		직위	구의원		성명	손진원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 액	변동액(천원)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 토지 (소계)			250,000	0	250,000	0	
본인	대지	인천 부평구 청천동 70-56번지 0.00㎡ (115.50㎡ 감소)	87,500	-	87,500 (87,500)	0	매도, 개인간의 채무 상환(62,000천원), 채권(20,000천원)
본인	공장용지	인천 부평구 청천동 70-58번지 0.00㎡ (216.00㎡ 감소)	162,500	-	162,500 (162,500)	0	매도, 새마을 융자금 상환(100,000천원), 선거자금(50,000천원), 개인간의 채무변제(12,500천원)
▶ 건물 (소계)			120,000	0	0	120,000	
배우자	아파트	인천 남동구 만수동 삼환아파트 건물 83.00㎡ (건물 14.62㎡ 증가)	120,000	-	-	120,000	가액변동없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소계)							
본인	자동차	2003년식 그랜저 XG 배기량(2,700cc) 증가	-	- (23,000)	-	-	등록 누락으로 제등록
▶ 예금 (소계)			18,376	25,731	6,317	37,790	
본인		농협 2,839(5,896 감소), 삼성화재해상보험 11,341(1,700 증가), 새마을금고연합회 2,845(2,845 증가)	18,376	4,966	6,317	17,025	배우자와 자녀 보험료 추가
배우자		교보생명보험 5,148(5,148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7,856(7,856 증가), 새마을금고연합회 1,011(1,011 증가)	0	14,015	0	14,015	
장녀		교보생명보험 2,400(2,400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4,350(4,350 증가)	0	6,750	0	6,750	
▶ 채권 (소계)				25,000		25,000	
본인		사인간 채권 증가	0	25,000	0	25,000	토지매각으로 인한 자금 여유
▶ 채무 (소계)			150,000	0	100,000	50,000	
본인	금융기관채무	신한은행 50,000, 기타(새마을금고) 0(100,000 감소)	150,000	0	100,000	50,000	토지매각으로 인한 자금 여유
총 계			238,376	50,731	156,317	132,790	증 감 액 : -105,586

소속	인천광역시 남동구		직위	구의원		성명	이영순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천원)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 토지 (소계)			91,447	4,799	3,407	92,839	
본인	임야	인천 옹진군 자월면 이작리 산 152 번지 21,818.00㎡	65,454	4,799	0	70,253	가액변동
본인	임야	인천 옹진군 자월면 자월리 산 119 -2번지 8,963.00㎡	25,993	-	3,407	22,586	가액변동
▶ 건물 (소계)			80,000	0	0	80,000	
본인	아파트	인천 남동구 만수동 담방마을아파 트 건물 66.60㎡	80,000	-	-	80,000	가액변동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 건설 기계 · 선박 및 항공기 (소계)							
본인	자동차	2005년식 세라토 배기량(1,500cc)	-	-	-	-	
▶ 예금 (소계)			20,000	0	0	20,000	
본인		국민은행 20,000	20,000	-	-	20,000	변동없음
▶ 채무 (소계)			36,000	0	0	36,000	
본인	금융기관 채무	농협 36,000	36,000	-	-	36,000	
총 계			155,447	4,799	3,407	156,839	증 감 액 : 1,392 (가액변동: 1,392)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07-10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변경)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구광명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변경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 3 . 27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구광명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69-22외 1필지 2,692.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구광명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자 : 최창환)
 - 주소 : 인천 남동구 만수동 851 대림하이빌 2동 301호
4. 사업시행기간 : 2003. 7월 ~ 2008. 6월
5. 사업시행인가일 : 2004. 5. 7
6. 변경 사유 및 내용

변 경 사 유	변 경 내 용
2006.4.17 용적율 개정 (250% ⇒ 300%)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건폐율(25.49% ⇒ 36.71%)
	용적율(249.97 ⇒ 281.23%)
	연면적(8824.90㎡ ⇒ 9860.82㎡)
	층수(지하1층,지상9~13층 ⇒ 지하2층,지상9~13층)
	세대수(66세대 ⇒ 69세대)
	근린생활시설 신설(213.30㎡)
	주차대수(73대 ⇒ 74대)
	조경면적(640.23㎡ ⇒ 734.0㎡)